

I**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1.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 주요내용

-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하였음
-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로 구성됐으며,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역내부가가치기준 계산방식 기업별 선택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이 포함되었음
-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관세 당국이 품목의 원산지 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무작정 물품을 수출했다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이 제도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
- 또한 모든 당사국별로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국가별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전문가 의견 (한태상공회의소 박동빈 부회장)

- 전자원산지 증명서가 상용화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태국에서는 전자문서 통용이 거의 불가 하였으나, 향후 태국의 전자문서 활성화로 인해 원산지 증명 등이 간소해질 전망
- 또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 특히 국가 간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및 관세 적용을 받아 양국 수출입에 긍정적인 결과 도출하기 희망

II**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1. 해당사항 없음**